

철도산업정보 관리지침

건설교통부 철도산업팀-2641(2007.12.10)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2조·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설치·운영과 철도산업정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공동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설치·운영과 철도산업정보의 관리 및 공동 활용 등에 관하여 다른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유관기관”이라 함은 철도와 관련된 정보를 생산·관리 또는 공동 활용하는 기관으로서 건설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기술연구원·지자체의 철도건설·운영관련기관 기타 철도관련 단체·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2. “철도산업정보”라 함은 철도유관기관이 철도건설·운영·유지관리 및 철도시설·차량 관련산업과 철도연구개발 관련 산업 그밖에 철도의 개발·이용·관리에 관하여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유지·관리하는 데이터·코드·문서·책자·이미지·음향·영상 등의 모든 전자적, 비전자적 자료를 말한다.
3. “철도산업정보화”라 함은 철도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철도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철도산업정보의 생산·관리 및 유통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제정하며, 공동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연계기반 및 법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철도산업정보센터”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설치한 철도산업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철도산업정보센터장”(이하 “정보센터장”라 한다)라 함은 철도산업정보 시스템 설치 및 운용 등 철도산업정보센터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6. “기관 등의 관리자”라 함은 철도유관기관이 철도산업정보 시스템과 연계되는 당해기관의 사용자 관리 및 정보유통 관리 등 당해 기관의 시스템 관리자를 말한다.

제4조(공동활용의 원칙) 철도유관기관이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철도산업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제2장 철도산업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철도산업정보센터의 조직구성 등) ① 철도산업정보센터는 센터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직원은 철도산업정보의 공동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철도전문인력과 시스템운영인력 및 행정인력으로 구성한다.

③ 정보센터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④ 정보센터장은 철도산업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유관기관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철도산업정보센터에 파견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보센터장이 정한다.

제6조(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 ① 철도산업정보센터는 철도산업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철도산업정보의 수집·분석·보급 및 홍보
2. 철도산업의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3. 철도산업정보 공동활용에 필요한 안정적인 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4. 공동활용 대상 정보의 디지털화 및 검색·열람 제공
5. 공동활용 대상 정보의 취합 및 자료보관소의 설치·운영

6. 철도산업정보 공동활용의 촉진을 위한 철도산업정보 및 사무처리절차 등의 표준화
7. 공동활용의 대상이 되는 철도산업정보의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
8. 철도산업정보 DB구축 중복방지를 위한 조정
9. 공동활용의 목적, 철도산업정보의 정보등급 및 철도유관기관의 보안수준 등을 고려한 접근권한의 등록
10. 공동활용 기록의 유지·관리 및 철도유관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보안 점검에 관한 업무
11. 철도산업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철도산업정보 자문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12. 그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업무
 - ②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정보센터장이 정한다.
 - ③ 정보센터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제공대상, 시스템의 구성 및 기타 철도산업정보센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철도유관기관이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철도산업정보센터 추진협의체 구성) ① 정보센터장은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설치·운영과 철도산업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도유관기관의 책임있는 관계자로 철도산업정보센터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철도산업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2. 공동활용을 위한 철도유관기관간의 주요협의 사항
 3. 협의체 구성에 대한 대상 선정 및 확대에 관한 사항
 4. 협약에서 협의체의 의결로 위임한 사항
 5. 기타 협의체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하여는 철도유관기관이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8조(철도유관기관의 협조)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철도유관기관의 장은 협의체에서 의결한 기관별 조치사항 및 철도산업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상호연계체계 구축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철도산업정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9조(철도산업정보시스템 운영 등) ① 철도유관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 대상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작성
2.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각 기관별 DB 구축. 이 경우 자료항목, 코드체계 및 운영체계 등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근거로 철도산업정보센터에서 확정한 표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3. 최초 생성이후 모든 기간의 공동활용 대상자료 제공

② 철도유관기관은 협약 또는 이 지침에 따라 철도산업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공동활용 대상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축에 필요한 연계장비를 철도산업정보센터에서 지원 한다.

③ 철도유관기관은 철도산업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공동활용 대상자료의 당해기관 자료목록을 철도산업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철도유관기관은 전자화 문서나 비전자화 문서를 철도산업정보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철도산업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보센터장은 철도산업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정보관리책임자 및 보안업무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네트워크 구성 등) ① 네트워크는 공중 인터넷망 방식으로 구성하되, 자료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최적의 대역폭이 보장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② 네트워크의 구성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철도유관기관은 접속을 허용하는 시스템의 도메인명 (또는 고정 IP주소)을 설정하고 이를 정보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스템 관리) ① 철도유관기관은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정보시스템에 당해기관의 기관관리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관리자는 기관관리자에게 대표 사용자 ID와 Password를 생성·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각 기관 내 사용자의 ID와 Password는 기관관리자가 생성·관리하되, 이에 대한 사항을 시스템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구축 후 기관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리자 지침서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산출물을 기관관리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시스템 보안) ① 기관관리자는 ID와 Password가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ID와 Password가 누설되거나 또는 누설된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즉시 시스템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새로운 ID와 Password로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각 기관별 제공자료에 대해 보안성과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정보 공개 범위 및 이용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기관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유통시스템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 보안 기본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네트워크 관리책임) 철도유관기관이 관리하는 해당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장애 등으로 인해 철도산업정보시스템 운용이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스템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각 철도유관기관 책임하에 해당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즉시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시스템 변경 등에 있어 상호협의) 철도유관기관은 철도산업정보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공동활용을 위해 정보시스템 또는 각 기관의 관련시스템 변경 및 보안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상호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 4 장 철도산업정보의 표준화

제15조(철도산업정보의 표준화) 정보센터장은 철도산업정보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철도산업정보의 수집·보존 및 전송 등에 관한 표준화
2. 철도산업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3. 기타 철도산업정보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16조 (철도유관기관의 책무) 철도유관기관의 장은 협의체에서 의결한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당해기관의 정보시스템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제 5 장 공동활용대상 철도산업정보

제17조(공동활용대상 철도산업정보) 철도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철도산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동이용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유관기관이 철도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획득한 모든 정보
2. 철도유관기관에서 생산한 자료 중에서 다른 기관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자료로서 협의체에서 공동활용대상으로 협의·조정된 자료 또는 정보

제18조(공동활용 제외 정보) 공동활용 대상정보는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단지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
2. 제17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또는 정보가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경우
3. 기타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협의한 정보

제 6 장 공동활용의 기본원칙

제19조(정보제공의 책무) ① 철도유관기관의 장은 철도산업발전을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철도산업정보를 철도산업정보센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공동이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철도유관기관의 장은 제18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철도산업정보센터에서 요청하는 철도산업정보를 연계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철도산업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철도산업정보의 이용) ① 철도산업정보센터는 철도유관기관이 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 하여야 한다. 단 철도유관기관별로 요청하는 보안등급과 사용자의 정보조회 권한에 따라 공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철도산업정보센터는 양질의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 각 철도유관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통합 가공하거나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로 개발하여야 한다.

제21조(철도산업정보 이용의 제한) 철도유관기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은 철도산업관련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영리행위
2. 정보에 관한 증명 행위
3. 정보의 임의변경에 의한 대외적 발표
4. 생성기관의 정보공개 범위를 위반한 자료제공
5. 자료생성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자료제공

부 칙

이 지침은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